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400

발의년월일: 2020년 4월 2일

발 의 자 : 한기영, 강동길, 김상진, 김인호,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이동현, 이현찬, 추승우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 참전국 도시 및 참전국 시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시외교의 잠재적인 자산으로 활용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점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유엔참전국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 차원의 참전국 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 협력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조).
- 라. 유엔참전국을 정리하여 해당 국가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중 전투 및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를 통한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6·25전쟁"이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 2. "유엔참전국"이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이하 "참전국"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국 기념행사 및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참전국을 기념하고, 참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참전국 기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참전국 관련 기념사업
- 2. 참전국 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
- 3. 참전국 관련 유적·유물의 발굴·수집·보존·전시 및 홍보 사업
- 4. 참전 관련 연구, 학술행사 등 학술활동 지원 사업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 시장은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엔참전국(제2조제2호 관련)

구분	국가	구분	국가
1. 전투	가. 미국	2. 의료	가. 스웨덴
지원국	나. 영국(아일랜드)	지원국	나. 덴마크
	다. 캐나다		다. 인도
	라. 터키		라. 노르웨이
	마. 호주		마. 이탈리아
	바. 필리핀		바. 독일
	사. 태국		
	아. 네덜란드(수리남)		
	자. 콜롬비아		
	차. 그리스		
	카. 뉴질랜드		
	타. 에티오피아		
	파. 벨기에		
	하. 프랑스		
	거. 남아프리카공화국		
	너. 룩셈부르크		

비고: 유엔참전국에는 6·25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분류되어 참전하였던 아일랜드 와 6·25전쟁 후 네덜란드에서 분리된 수리남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 사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 2,213,550천원(연평균 442,71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442,71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0~2024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참전국 관련 기념사업은 국제연합 참전 기념행사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참전국 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은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와는 기교류중이므로 참전국 중 아직 서울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지 않은 6개국(필리핀, 아일랜드, 수리남,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중 일부 국가에 대하여 연 1회 의원 10명과 공무원 5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213.550천원(연평균 442.710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세입	_	_	-	-	-	-	_
	소계(a)	_	-	-	-	-	_
세출	참전 기념행사 (안 제5조제1항제1호)	253,000	253,000	253,000	253,000	253,000	1,265,000
	참전국 도시 방문 (안 제5조제1항제2호)	45,110	45,110	45,110	45,110	45,110	225,550
	참전국 유물전시 (안 제5조제1항제3호)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참전 관련 학술행사 (안 제5조제1항제4호)	69,600	69,600	69,600	69,600	69,600	348,000
	비영리단체 지원 (안 제5조제2항)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165,000
	소계(b)	442,710	442,710	442,710	442,710	442,710	2,213,550
□총 비용(b-a)		442,710	442,710	442,710	442,710	442,710	2,213,550

- 국제연합 참전 기념행사 : 연간비용 253,000천원 $\times 5$ 년=1,265,000천원
- ※ 연간비용 : 유엔 참전 기념행사로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2020년 '유엔의 날 행사'예산 253,000천원 적용
- 참전국 도시 방문 : {(의원 10명×국외여비 3,121천원)+(공무원 5명×국외여비 2,780천원)}×연 1회×5년=225,550천원
- ※ 국외여비 단가는 2019년도 의원 및 공무원 1인당 국외여비 지출액 적용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 총 지출액 412백만원÷출장인원 132명=3,121천원
 - · 공무원 1인당 국외여비 : 총 지출액 2,424백만원÷출장인원 872명=2,780천원
- 참전국 유물전시 : 연간 전시비용 42,000천원×5년=210,000천원
- ※ 연간 전시비용 : 국가보훈처 산하 유엔평화기념관의 2020년 '유엔평화기념관 유물관리 및 상설 전시실 리뉴얼'예산 42,000천원 적용
- 참전 관련 학술행사 : 연간비용 69,600천원×5년=348,000천원
- ※ 연간 학술행사 비용 : 유사 국제 학술행사인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의 2020년 '해외도시 초청 워크숍'예산 69,600천원 적용
- 비영리단체 지원 : 연간비용 33,000천원×5년=165,000천원
- ※ 연간 비영리단체 지원 비용 : 2020년 국가보훈처에서 유엔군참전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의 유엔 참전국 기념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예산 33,000천원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2 02-2180-7943

e-mail: pjooyong@seoul.go.kr